

## 【발명의 설명】

### 【발명의 명칭】

의결권 위임 시스템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의결권 위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임치계좌에 입고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대리주체에게 효율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주식회사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고 있으며, 주식을 소유한 사람 즉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영업이익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부수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발의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권이며,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1 주당 1 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주식을 많이 보유할 수 록 의결권 또한 커지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의 안건은 비율적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한 이른바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안건이 결정되는 구조상 다수의 소액주주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주주의 의사에만 따르는 방향으로 안건이 결정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에 대한 균등한 이익배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부 대주주와 경영진의 이익만을 위한 근시안적인 정책들이 통과되기도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대주주의 그릇된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이 연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보다 큰 의결권을 형성하는 이른바 주주행동주의 개념의 소액주주 연대방식이 발현되었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대리인은 위임받은 주식의 수만큼 확대된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소액주주들의 연대 규모에 따라서는 대리인이 대주주 보다 큰 의결권을 갖게 되고, 소액주주들의 의사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주주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주주 연대방식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1) 의결권 위임의 절차상 문제

대리인이 소액주주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임자료를 주주총회를 주최하는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소액주주로부터 정당하게 의결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위임자료로서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또한 첨부되어야 한다.

이는 인감 및 인감증명서에 의해 공신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이른바 사적인 위임장만으로는 위임의 진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리인의 입장에서 다수의 소액주주로부터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받아서 취합하고 정리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수고가 소요되는 일이며,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위임장에 날인하고,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부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 2) 의결권 위임의 안정성 문제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과 같이 공신력이 확보된 위임자료에 근거하여 의결권이 대리인에게 위임되었다 할지라도, 위임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마다 매번 개별적으로 위임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상법상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이른바 포괄적인 위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주주보호 차원에서 포괄적인 위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가 수시로 개최되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매번 위임자료를 제출하여야 되므로, 어느 기준시점에 10% 이상의 지분이 모여서 법적으로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도 일시적인 표대결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뿐이지, 단일 대주주로서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종래의 의결권 위임 방식에 의하면, 위임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불편함과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항하여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발명의 내용】**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결권 위임에 따른 절차가 간편해지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을 제공한다.

####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에 따른 의결권 위임 시스템은, 대리주체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부터 주식을 입고 받아서 임치할 수 있는 임치계좌를 증권사에 개설하고, 상기 주주가 해당주식을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하면, 상기 대리주체가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된 해당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주주로 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은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의 증권사 주식계좌로 출고반환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의 수량만큼 일정한 금액의 임치수수료가 주주 소유의 예금계좌에서 대리주체 소유의 예금계좌로 자동입금 되도록 이루어진다.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은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증권사 계좌로 출고 반환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의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은 주주가 소유한 증권사 계좌로 입고되도록 이루어진다.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된 특정회사의 주식수량이 상기 특정회사의 전체 주식수량 대비 일정비율에 도달하면, 대리주체 및 해당 주식의 주주에게 이러한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이루어진다.

상기 주식이 임치계좌에 입고되기에 앞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에 대한 위임계약을 거치게 되며, 상기 위임계약은 계약사항이 기재된 전자계약서에 대리주체 및 주주가 각자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명된 전자계약서는 데이터화 되어 별도의 서버 내지는 증권예탁원 및 증권사의 서버에 저장되도록 이루어진다.

상기 전자계약서에 대한 서명은 지문입력방식 또는 문자입력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대리주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상기 임치계좌는 1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1 계좌만이 개설되도록 이루어진다.

상기 임치계좌에 대한 주식 입출고는 증권사의 주식거래 시스템과 연동되는 별도의 주식임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임치계좌의 접속을 위한 조회용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관리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별도로 발급되며, 상기 조회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되는 경우에는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의 현황과약만이 가능하며, 상기

관리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되는 경우에는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의 출고도 가능하도록 이루어진다.

####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의결권 위임 시스템에 의하면, 임치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임치계좌를 소유한 대리주체에게 자동적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의결권 위임에 따른 절차상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안정성이 유지됨으로써 소액주주 연대의 올바른 경영참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점이 있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본 발명에 따른 의결권 위임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 본 발명에 따른 의결권 위임 시스템에 의한 의결권 위임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 1 과 도 2 를 참조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의결권 위임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의결권 위임 시스템에 의한 의결권 위임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설명에 앞서, 본 발명에서는 정보입력이 가능한 각종 컴퓨터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데스크탑 PC, 노트북 등)의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단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단말기를 이용한 서명이라 함은 단말기에 적용되는 전자계약서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에 공인인증된 사용자의 신원을 입력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본 발명에 따른 의결권 위임 시스템은, 대리주체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부터 주식을 입고 받아서 임치할 수 있는 임치계좌를 증권사에 개설하고, 상기 주주가 해당주식을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하면, 상기 대리주체가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된 해당주식(이하 임치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주주로 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임치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면 증권사 서버(10)로 부터 대리주체와 주주에게 이러한 내역이 각자의 단말기(20)(22)에 의하여 통지된다.

상기 임치주식은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의 증권사 주식계좌로 출고 반환될 수 있으며, 상기 임치주식의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은 주주가 소유한 증권사 계좌로 입고되도록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임치주식의 수량만큼 일정한 금액의 임치수수료가 주주 소유의 예금계좌에서 대리주체 소유의 예금계좌로 자동입금 되도록 이루어지며, 대리주체는 단말기(20) 통해 임치수수료의 입금여부, 입금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주는 임치수수료가 출금되는 예금계좌의 변동사항을 금융기관의 서버(12)로 부터 통지되는 사항을 단말기(22)를 통해 확인하게 되며, 임치수수료가 부족하면 추가로 입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예금계좌는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의 계좌는 물론이고 증권사의 예탁금 계좌도 될 수 있다.

여기서, 임치수수료는 예시적으로 1 주당의 특정금액 내지는 임치시점의 주가에 비례하는 일정비율로 결정될 수 있다.

예시적으로, 임치주식의 수량이 1 백만주 이상인 경우에는 주당 10 원, 1 백만주 미만의 경우에는 주당 20 원 등으로 임치수수료가 설정될 수 있다.

임치주식의 수량 및 임치계좌로 부터 주주의 증권사 주식계좌로 출고되는 주식의 수량이 특정수량 단위로 한정될 수 있는데, 예시적으로 10 주 단위, 100 주 단위 등으로 한정될 수 있다.

임치주식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으로 임치상태가 유지되고, 출고후 재임치도 가능하게 이루어진다.

상기 주식이 임치계좌에 입고되기에 앞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에 대한 위임계약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기 위임계약은 계약사항이 기재된 전자계약서에 대리주체 및 주주가 각자의 단말기(20)(22)를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전자계약서에 대한 서명은 지문입력방식 또는 문자입력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서명된 전자계약서는 데이터화 되어 대리주체가 관리하는 서버(14) 내지는 증권예탁원 및 증권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될 수도 있다.

참고로, 위임계약 사항에는 앞서 기술한 수수료 기준, 입금계좌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위임계약 사항에 임치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임치수수료가 주주의 임치계좌 사용에 따라 대리주체가 얻는 수익거래성 금전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반면, 임치수수료에 대한 사항이 없으면, 목적이 불분명한 단순증여에 따른 금전이동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하면, 특정회사의 임치주식 수량이 상기 특정회사의 전체 주식수량 대비 일정비율에 도달하면, 대리주체 및 해당 주식의 주주에게 이러한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이루어진다.

또한, 특정회사의 임치주식의 지분율이 상기 특정회사의 전체 주식수량에 대비하여 공시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정도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임치주식의 지분율 변동에 따른 정보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대리주체로서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라는 사업목적에 갖는 특수목적법인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임치계좌는 1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1 계좌만이 개설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식종목별 관리가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임치계좌의 접속을 위한 조회용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관리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별도로 발급되는데, 상기 조회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되는 경우에는 임치주식의 현황(잔고, 출고수량, 입고수량, 변동일시 등)에 대한 파악만이 가능하며, 상기 관리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되는 경우에는 임치주식의 현황과약 뿐만 아니라 임치주식의 출고도 가능하게 된다.

상기 조회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하나의 임치계좌당 1 개씩 할당되며, 다중접속 가능하게 설정됨으로써 대리주체와 임치주식의 주주는 물론이고, 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서는 임치주식의 현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제 3 자 또한 이를 이용하여 동시에 접속 할 수 있게 된다.

상기 관리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임치주식의 주주가 직접 설정하며, 주주만이 알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된 형태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임치계좌에 대한 현황조회 및 주식입출고 등의 조작용 증권사의 주식거래 시스템과 연동되는 별도의 주식임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위임과정이 완료되면, 임치주식의 의결권이 대리주체에게 위임되었음을 알리는 통지가 주주의 단말기(22)로 전송됨으로써 주주는 위임과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주식의 주주가 상기 임치계좌에 해당주식을 입고하여 임치하는 것만으로, 해당주식에 따른 의결권이 임치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대리주체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임치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에 대한 위임이 지속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시마다 매번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위임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게 된다.

따라서, 대리주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임치계좌에 특정주식이 지속적으로 입고되어 해당주식의 임치수량이 법령상 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기준(10% 이상)을 만족하게 되면 대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의하면 임치주식을 소유한 이른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건전한 감시 내지는 경영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임치주식에 대한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은 주주의 증권사 계좌로 입고되므로, 주주가 주식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데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기 임치주식의 주주는 조회용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관리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치계좌에 접속함으로써, 임치계좌를 조회하거나 임치주식을 출고 할 수 있으며, 제 3 자 역시 조회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함으로써 임치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주주 및 제 3 자가 임치주식의 변동사항을 동시에 수시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임치주식에 대한 금융사고가 방지된다.

이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설명을 마치는 바, 앞서 설명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 없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의 실시가 가능하고 이러한 변형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대리주체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부터 주식을 입고 받아서  
입치할 수 있는 입치계좌를 증권사에 개설하고,

상기 주주가 해당주식을 상기 입치계좌에 입치하면,

상기 대리주체가 상기 입치계좌에 입치된 해당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주주로 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입치계좌에 입치된 주식은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의 증권사  
주식계좌로 출고반환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입치계좌에 입치된 주식의 수량만큼 일정한 금액의 입치수수료가  
주주 소유의 예금계좌에서 대리주체 소유의 예금계좌로 자동입금 되도록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은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증권사 계좌로 출고 반환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의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은 주주가 소유한  
증권사 계좌로 입고되도록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된 특정회사의 주식수량이 상기 특정회사의 전체  
주식수량 대비 일정비율에 도달하면, 대리주체 및 해당 주식의 주주에게 이러한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주식이 임치계좌에 입고되기에 앞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에 대한 위임계약을 거치게 되며, 상기 위임계약은 계약사항이 기재된 전자계약서에 대리주체 및 주주가 각자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계약서는 데이터화 되어 별도의 서버 내지는 증권예탁원 및 증권사의 서버에 저장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계약서에 대한 서명은 지문입력방식 또는 문자입력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대리주체는 자연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대리주체는 법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임치계좌는 1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1 계좌만이 개설되도록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청구항 13】**

제 1 항 내지 제 9 항의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임치계좌에 대한 주식 입출고는 증권사의 주식거래 시스템과 연동되는 별도의 주식임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임치계좌의 접속을 위한 조회용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관리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별도로 발급되며,

상기 조회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되는 경우에는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의 현황과약만이 가능하며,

상기 관리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되는 경우에는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의 출고도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의결권 위임 시스템.

## 【요약서】

###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의결권 위임 시스템은, 대리주체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부터 주식을 입고 받아서 임치할 수 있는 임치계좌를 증권사에 개설하고, 상기 주주가 해당주식을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하면, 대리주체가 임치계좌에 임치된 해당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주주로 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은 주주의 증권사 주식계좌로 출고반환될 수 있다.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의 수량만큼 일정한 금액의 임치수수료가 주주 소유의 예금계좌에서 대리주체 소유의 예금계좌로 자동입금 될 수 있다.

상기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은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증권사 계좌로 출고 반환될 수 있으며, 임치계좌에 임치된 주식의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은 주주가 소유한 증권사 계좌로 입고될 수 있다.

상기 주식이 임치계좌에 입고되기에 앞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에 대한 위임계약을 거치게 되며, 상기 위임계약은 계약사항이 기재된 전자계약서에 대리주체 및 주주가 각자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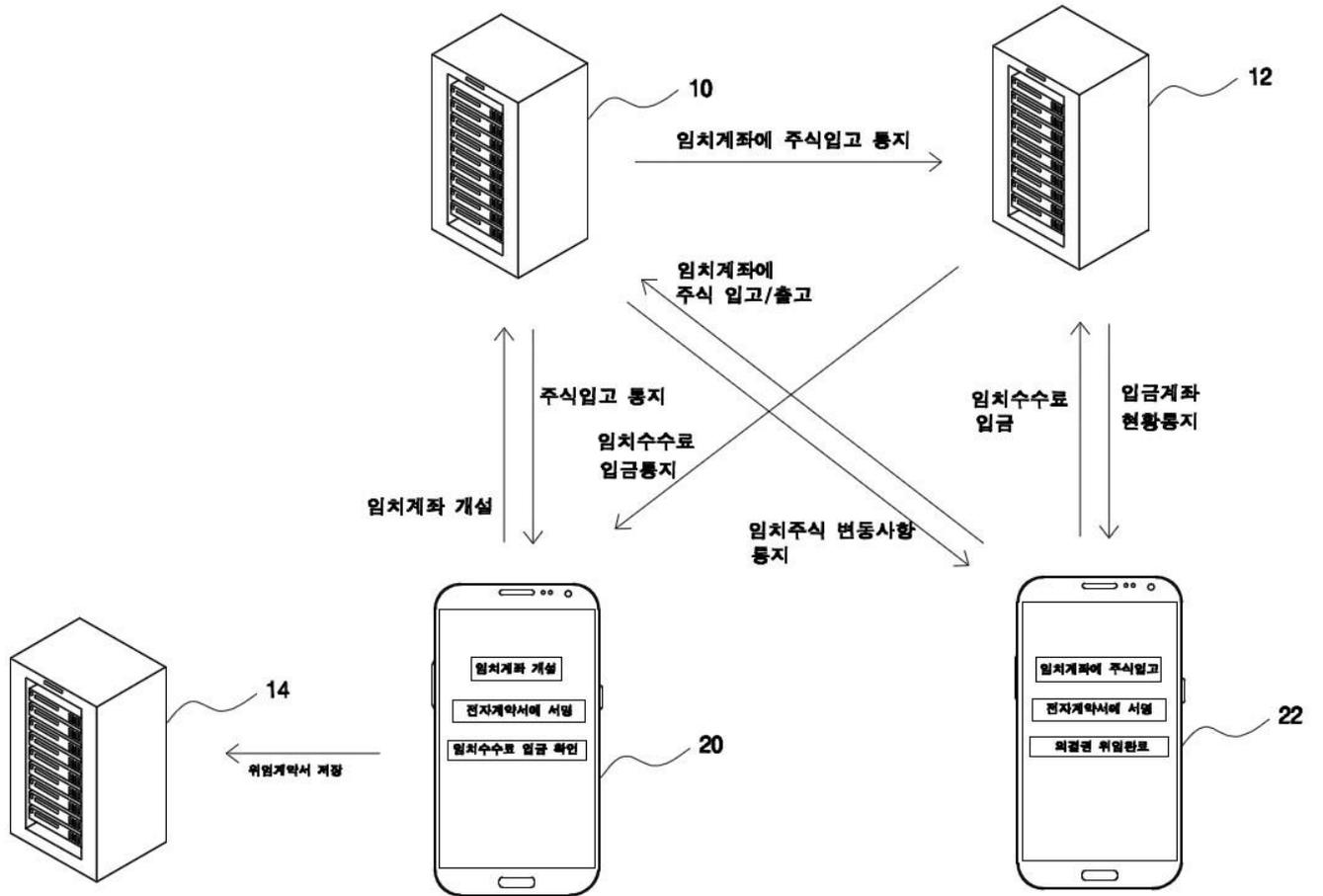
본 발명에 따른 의결권 위임 시스템에 의하면, 임치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임치계좌를 소유한 대리주체에게 자동적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의결권 위임에 따른 절차상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안정성이 유지됨으로써 소액주주 연대의 올바른 경영참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1

【도면】

【도 1】



【도 2】

